3883
340.975

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分斷國調査研究

西獨의 東獨政策의 變遷과 西獨의 國內外事情

研究執筆責任 孫 亨 重

(略歷) 서울大學校 大學院卒 政治學碩士(1956)
駐韓西獨大使館 文政官補佐官 (1955)
西獨함브르크大學校大學院博士過程 (1971)
國土統一院 非常任研究委員 (現在)

刊行責任 梁 榮 植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1. 머리말 3

2. 「아데나워」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独国内外情勢 5

3. 「에어할트」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独国内外情勢 18

4. 「키싱거」大聯政의 統一政策과 西独国内外情勢 25

5. 西独의 対東欧政策 31

6. 独逸 法統性 및 統一性에 대한 東西独 立場과
東西独基本条約 35

7. 맺는말 41

8. 附 錄 43

1. 머 리 말

人類史上 未曾有의 戰禍를 입은 独逸領土의 一部에 樹立된 西独外交政策의 主要目標는 両分된 祖国을 어떠한 方法으로 統一할 것인가 하는 問題였다. 이 目標를 追求하는 手段方法은 設使 西独国内外政勢의 諸要因相互間의 衝突結果에 따라 往往 変化되었다 할지라도 問題自体의 本質에는 変함이 없었다. 理由는 統一問題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는 外的要素가 戰後 四半世紀에 걸쳐 西独政府의 行動半経을 넘어선 強大国間의 函数作用에 따라 左右되는 現国際政治의 本質 그 自体에 基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統一問題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内的要素인 西独内 執権党의 手段方法은 時代에 따라 그리고 그때 그때의 国際情勢에 따라 変化되었다. 本報告書는 西独政党이 統一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追求하는 手段方法과 西独国内情勢의 変化過程 및 그에 相応하는 国際潮流의 進路를 相互比較하고 어떠한 国内外情勢에서 어떠한 手段方法이 動員되었는가를 分析評価하여 類似한 分断関係에 놓여있는 韓国의 当面課題의 根本性格을 究明하는데에 寄与코자 한다.

2. 「아데나워」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獨国内外 情勢

戰後 西方聯合国中特히 美国과 蘇聯을 中心으로 한 東西両陣営内에 冷戰이 始作되어 1949年에 東西独이 各各 美·蘇의 後援 아래 相異한 政治体制를 갖고 樹立됨으로서 独逸은 일단 完全히 分断되었다.

그러나 西独의 初代首相 「아데나워」는 自由民主体制에 依한 祖国의 統一을 期必코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自由속에서의 統一(Einheit in Freiheit)의 信念으로 西独外交政策의 最高目標를 独逸統一에 두었다.

그의 統一政策의 内容은 戰後 폴란드의 統治地域으로 編入된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以東의 東欧地域과 仏國西管轄로 移讓된 「잘」(Saar)地方 그리고 東西独을 合친 1937年의 旧独逸領土를 全部 統合한다는 것이었다. 即 復元的 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아데나워」의 統一政策은 두개의 原則을 基調로 하고 있었는바 그 하나는① 「워싱톤」「모스크바」가 問題解決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信念的 原則이었으며 또 하나의 原則은② 힘의 均衡을 西方側에 有利하게 만들어서 힘에 의한 協商으로 「모스크바」가 부득이 西方側 要求에 同意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힘을 根幹으로 하는 政策的 原則이었다.[1] 前者의 政策原則은 所謂 非中立

原則으로도 불리웠는바, 西独은 戰後 兩大超大国의 主導下에 形成된 冷戰의 심장부에 位置하여 西方의 自由나 아니면 新生帝国主義共産列強인 소련의 위협에 굴복하여 西方을 背反하고 中立路線을 내세워 親蘇主義로 나갈 것이냐 하는 兩者択一的 状況에서 分明히 西方의 自由民主主義를 選択했던 것이다.

後者의 原則은 힘의 政策(Machtpolitik)으로써 美国의 核独占 내지 決定的 優位를 배경으로 圧力을 通하여 協商을 誘導함으로써 統一에 接近하려는 것이었다. 할슈타인 原則(Hallstein Doktrin)도 이의 한 表現이었다. 後述되는 바이지만 状況은 変化하며 変化의 状況에는 伸縮性있는 政策展開가 必要하게 된다.

즉 할슈타인 原則은 冷戰期의 独逸的 状況의 表現이었다는 말이다. "原則의 奴隷"(Der Gefange der eigenen Doktrin)로 전락되어 버리는 새로운 状況에서는 할슈타인 原則은 발전적으로 폐기될 運命을 안고 있었다.

具体的으로는 西方自由世界內에서 西独의 힘을 可能한 限 強化하여 美国으로 하여금 不可避하게 西独을 支援하게 만들어 対蘇協商에서 高地를 占領한 後 蘇聯의 譲歩를 얻어서 統一을 이룩한다는 政策이었다.

西独은 自体防衛를 大戰直後에는 東欧共産圈의 威脅과 그에 対応하는 西方聯合国의 復合的 軍事力에 依存하고 있었다.

冷戰이 激化되면 北大西洋防衛機構가 成立되고 西独의 同機構加入問題가 挙論되자 「아데나워」는 同機構에 加入하고 同機構內에서

再武装을 함으로서 西独의 힘을 強化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決定은 実로 冷戦体制의 切実한 要求와 「아데나워」의 外交指針이 交叉하게 된 接合点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와같은 決定을 実現시키기 위한 構想은 欧羅巴에서는 仏蘭西와의 関係를 改善하여 過去를 清算할 뿐 아니라 유대를 強化하여 欧羅巴에서 主導権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汎世界的인 次元에서는 大西洋防衛機構内에서 美国의 힘을 背景으로 하여 西独의 힘을 強化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데나워」의 構想은 的中하였다. 欧羅巴経済共同体에 加入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西独経済는 驚異的인 発展을 거듭하기 始作하였고 北大西洋防衛機構内에서의 強力한 西独의 位置는 仏蘭西로 하여금 「잘」地方을 西独에 返還하게 만들었다.

欧羅巴 石炭鉄鋼協会에 西独参与를 勧誘한 仏蘭西는 元来 「잘」地方의 鉄鋼工業을 共同管理함으로서 "잘"返還後 西独의 鉄鋼工業発達을 間接的으로나마 統制할려고 하는 心算이었으나 「아데나워」는 이 機会에 仏蘭西와의 関係를 改善할 뿐 아니라 仏蘭西와 同等한 会員이 됨으로서 主権回復的 側面에서 国際的 地位를 向上시킬 수가 있었든 것이다.[2)]

이러한 地位向上과 経済再建의 기틀은 東方政策 (Ostpolitik) 을 힘차게 추진해나간 社民党의 Brandt政権에 比하면 統一接近에 있어서 갖가지 취약요소를 노정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국가재건과 국민意気의 재흥 및 경제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볼때, 사실상 오늘의

東方政策의 出帆을 期約해 준 튼튼한 整地作業이었다고 評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西独의 모든 政党이 「아데나워」의 外交路線을 支持한 것은 아니였고 基民党内의 모든 派閥이 「아데나워」의 外交路線을 支持하였던 것은 아니였다. 西独再武装問題나 親仏外交政策에 있어서는 基民党内 特別한 反対意見이 抬頭되지 아니하였으나 旧教的 保守勢力에 依한 欧羅巴 統合이 推進되지나 않을까 하는 新教信奉者들은 懐疑의 눈초리로 「아데나워」의 外交進路를 바라보고 있었고 自由主義経済体制를 信奉하는 財閥系統과 反宗教的 中産層을 基盤으로 하는 自民党은 英国을 包含한 欧羅巴가 世界舞台에서 独自的 路線을 걸어가야 한다고 「아데나워」路線에 反対하고 나섰다.[3]

社民党은 基民党과는 相異한 統一方途를 構想하고 있었다. 社民党의 見解에 따르면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우선 蘇聯과의 理解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蘇聯이 反対하는 限 独逸統一은 困難하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蘇聯이 戦勝国으로서 四強協定에 따라 独逸問題에 대하여 共同決定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共産主義体制를 採択하고 있어서 西独体制에 反対할 수 있으므로 이 難関이 우선 克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

社民党의 이와같은 主張의 裏面에는 또 다른 理由가 있었다. 「아데나워」와 「슈트라우스」를 잇는 基民党内旧教保守派는 旧教勢力을 背景으로 欧羅巴統合을 推進하고 있는 印象을 풍기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와같은 統合団結은 社民党의 路線에 正反対되는 것이었다. 社民党은 以前에 東部独逸에 가지고 있었던 基盤을 独逸이

東欧로 分断됨으로서 잃어버렸던 까닭에 잃어버렸던 基盤을 다시 回復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回復하는 것이 急先務였다.[5]

社民党은 欧羅巴石炭鋼協会에 관해서도 相異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社民党의 主張으로서는 同協会는 資本主義体制를 維持強化하기 위한 旧教的 保守勢力의 結束을 위한 手段方法에 不過하다는 것이며 西独의 経済体系를 仏蘭西에 隷属시키려는 術策이라고 非難하였든 것이다. 西独의 欧羅巴石炭鉄鋼協会加入을 이와같이 反対하든 社民党은 西独経済가 同協会를 通하여 눈부신 発展을 거듭하게 되자 1954年에 이르러서는 反対主張을 撤回하여 버렸다.

社民党은 또한 「아데나워」의 西独再武装政策에도 反対하였던것이다. 独逸再武政策은 곧 "中立은 없다"라는 標語와 同意語가 되고 있었고. 戦後初期의 社民党의 中立論者들은 이를 공격했다.

西独이 再武装을 하게되는 境遇 独逸統一展望은 暗淡하여질 뿐 아니라 国際緊張을 造成하고 蘇聯을 刺戟하게 되며 蘇聯을 刺戟하면 西独에 有利하지 아니한 結果를 招来하고 나아가서는 独逸이 敗戦한지 얼마되지도 아니하여 또다시 軍国主義的 路線을 採択하였다는 印象을 줌으로써 새로 태어난 西独民主主義의 前途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6]

社民党이 再武装을 反対한 理由는 이것뿐이 아니다. 萬若에 西独이 大西洋防衛機構内에서 再武装을 한다면 西独이 旧教的保守勢力圏으로 統合됨으로서 欧羅巴는 完全히 分割되어 버린다는 것이다.[7]

社民党의 主張에 따르면 西独은 二次大戦敗戦結果 戦勝聯合国이 独逸全体에 대한 責任을 지고 있음으로 主権이 完全히 回復될 때까지 如何한 防衛体制에도 加担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8]

当時 西独輿論은 敗戦의 쓰라림과 未曾有의 戦禍를 미쳐 잊기도 前에 西独이 太平洋防衛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그다지 歓迎하지 않고 있었지만 大戦直後 極甚한 経済的 困難과 政治的 混乱을 겪어야 하였던 西独国民들은 「아데나워」政府가 成功的 外交政策을 遂行하여 西伯林封鎖때와 같이 安保問題에 있어서 훌륭한 手腕을 発揮하였고 経済問題에 있어서도 西方側에 接近함으로서 1952年代初에 이미 輸出超過를 이룩할 程度로 驚異的인 発展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事実을 皮膚로 感知하고 있었으므로 西独이 設使 西方側防衛体制에 加担하드라도 継続하여 成功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心理的 連鎖作用에 사로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아데나워」政府는 西独国民의 民中에 벌써 政治的 安保와 経済的 国民의 심볼로 具化되어 있었다.[9]

이러한 客観的 事実을 度外視한 社民党은 継続 対蘇協商을 通한 統一政策만을 앞세웠고 強調하였던 까닭에 統一以外의 다른 問題들은 自然的으로 疎忽히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大戦直後 社民党의 失策은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冷戦은 激化되고 冷戦이 激化되자 統一이란 거의 実現不可能한 것이라고 断念한 輿論을 度外視하는데도 있었던 것이다. 社民党은 政策上 이와같이 国際的으로는 対蘇接近策을 主張함으로서 当時의 国際潮流

에 逆行하고 있었고 国内的으로도 一般輿論과 分離되고 孤立되어 있었다.

社民党의 独逸統一政策을 支持한 唯一한 圧力団体는 労組였다. 労組는 基民党이 優越한 政治的 地位를 確保하게 된 動機가 무엇보다도 東独에 있는 可能한 労組指導者들의 分断으로 말미암아 西独政界에 接近할 수 없게 된 現実에 있다고 믿었기에 統一만이 労組의 唯一한 再生方途라고 確信하게 되었고 이러한 信念에서 社民党의 統一政策과 対蘇協商論을 支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立場에 놓여 있었다.[10]

그러면 当時 基民党에 依한 西独의 対東独観 및 対東欧関係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強大国과의 関係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잠간 살펴 보기로 한다. 「아데나워」政府는 東独政権이 自由로운 国民의 意思에 따른 選挙에 의하여 樹立된 政権이 아니므로 不当한 政権으로서 西独은 이러한 政権을 認定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西独政権만이 正当한 過程을 밟아 樹立된 政権으로서 東独을 包含한 独逸全体를 代表하며 東独을 代表하여 国際的으로 発言할 수 있는 것이다.[11] 이러한 原則을 創案한 사람은 当時 外務次官이었던 「할슈타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이 原則을 할슈타인 原則이라고 부른다. 할슈타인原則이란 東独의 存在를 承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東独의 存在를 承認하는 国家와는 西独이 外交関係를 断切하여 버린다는 国際法的 報復措置도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原則에 따라 西独은 1957年「티토가」東独을 承認하자 유고슬라비아와의 外交関係를 断切하여 버렸고 같은 理由로 1963年에는 큐바와 그리고 1965年에는 예젭트와 断交하여 버렸다. 이와 같이 峻厳한 原則인 「할슈타인原則」이 比較的 잘 遵守되었던 背景에는 西独의 経済力이 이 原則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2] 基民党의 対東独関係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大体的으로 否定的이고 競争的이었다.

「아데나워」政府는 蘇聯을 비롯한 東欧共産圏이 폴란드西部国境線이라고 主張하는 오더-나이세線에 관해서도 強硬路線을 固守하였다. 오더-나이세線은 포스담宣言에 依하여 独逸統一이 이룩된 後에 独逸과의 講和条約에서 最終的으로 調整하기로 되어 있었다. 폴란드는 西独이 後日에 이러한 포스담宣言을 利用하여 오더-나이세以前의 旧独逸領土의 返還을 요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데나워」政府는 폴란드의 거듭된 要求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오더-나이세線을 前述한 포스담宣言을 根拠로 認定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西方側聯合国도 西独側의 이러한 主張을 正当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와같은 対共産圏強硬路線은 西方側의 独逸統一方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데나워」政府는 統治의 合法性이 国民主権에서 由来되는 것이므로 統一은 東独에 自由選挙를 実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喝破하였고 西方側聯合国들은 西独의 立場을 後援하였다. 그러나 蘇聯側共産圏에서는 独逸統一은 独逸中立化를 通하여 成就되

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基民党의 自由選挙에 依한 統一方案에 対立하였다.

共産党은 1946年 10月 20日 伯林選挙에서 26席이란 極少数의 議席을 차지하였을 뿐이었다. 130席을 헤아리는 伯林洲議会選挙에서 26席이란 絶望的 惨敗였다.[13] 国民의 呼応을 받지 못한 共産党이 自由選挙를 賛成할리 萬無하였다. 이와같은 状況에서 萬若 自由選挙에 依한 独逸統一이 이루어져서 独逸이 自由陣営에 統合된다면 蘇聯의 東欧影響圈은 적지 아니한 威脅을 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蘇聯의 中立化独逸統一方案은 蘇聯立場에서 보면 나올 법도 한 것이었다.

蘇聯의 1950年代 独逸中立化案에는 또 한가지 理由가 있었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아데나워」는 1952年 3月에 大西洋防衛機構內에서 西独을 再武装한다는 方針을 굳히고 있었으므로 蘇聯은 萬若 西独이 再武装하는 境遇 또 다시 独逸의 軍事的 威脅에 直面하게 되며 蘇聯安保는 難境을 免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14] 따라서 蘇聯政府는 外交覚書를 発送하여 西独의 再武装을 沮止하고 西独의 ~~太平洋~~防衛機構加入을 妨害하여 自信의 安全을 企図하고 独逸中立化方案을 1954年 正式으로 提案하였던 것이다.[15]

그러나 美国과 西独이 이와같은 蘇聯의 底意를 모를리 없었다. 共産勢力封鎖를 第一義的인 美国国利로 看做했던 当時의 美国은 西独을 共産勢力의 膨張을 沮止하기 위한 保塁로 利用코자 하였으므로 独逸中立化方案은 当然히 拒否되어야 할 処地에 있었고 美国의

対共安全策이었든 大西洋防衛機構도 相当한 進歩를 이룩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蘇聯의 提案은 再考의 価値가 없었다. 其他 欧羅巴諸国들은 統一된 独逸은 威脅的 存在로 看做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均衡에 変化를 招来한다는 見地에서 蘇聯의 独逸中立化方案을 積極的으로 支援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16] 이러한 独逸의 強力한 国力에 대한 우려는 中立化統一이던 西方의 統一이던 各国들의 否定的인 反動을 일으켰다. 이는 한반도와 다른 특수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953年 蘇聯에서 「스탈린이」 死亡하고 原子弾을 発明하게 되자 欧羅巴의 政治 気流는 急変하기 始作하였다. 美国은 "롤백" 政策을 採択하게 되었고 西独은 大西洋防衛機構加入을 서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소련이 原子弾을 保有하게 되자 「아데나워의」 힘의 정책은 더욱 빛을 잃기 시작했다.

西独이 同機構에 일단 加入하게 되자 蘇聯은 自身의 独逸中立化統一方案이 実現不可能하게 된것을 認知하여 이 方案을 抛棄하고 두개의 独逸이 存在한다는 現実論으로 対独逸政策을 転向시키게 되었다. 現実論이라기 보다는 東欧衛星国化作業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東独을 일단 西独으로 부터 分離하여 共産体制化하기 위한 策略의 전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5年에는 西独과 外交関係를 樹立하기로 合意하였고 1956年에는 初代駐西独蘇聯大使가 본(Bonn)에着任하였다. 1955年国交合意後 「아데나워가」 모스크바를 訪問하였을 때 「후루시쵸프」는 蘇聯이 더이상 西独을 北大西洋防衛機構로 부터 離間시킬 意思를 갖고 있지 않다고 確言하였다.[17] 蘇聯의

独逸二国家並存에 依한 現状固着政策은 이러한 過程을 밟아서 発端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西独은 如前히 東独의 存在를 否認하였다. 当時 蘇聯은 戦勝国으로서 独逸問題에 대한 責任을 지고 있었으므로 独逸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不可避한 存在였다. 따라서 統一問題를 追求하기 위해서는 蘇聯과 通話를 継続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에 「아데나워」政府는 不得已 蘇聯과 外交関係를 開設하였다.

西独이 東独의 存在를 否認하자 蘇聯은 自身의 独逸二国家主権에 依한 現状固着政策이 失敗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不安은 蘇聯으로 하여금 如何한 手段을 使用하여서도 西独이 東独을 承認하도록 強要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우선 蘇聯은 西伯林의 地位가 政治的으로나 法的으로 不安한 状態에 놓여 있었다는 点에 着眼하였다. 그리하여 西伯林에 관하여 西独으로 하여금 東独과 直接 交渉하도록 措置를 取한다면 西独이 東独을 承認하는 結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1958年 11月 蘇聯은 西伯林을 非軍事的 自由市로 만들라고 提案하였다. 西方側의 反応은 各各 相異하였다. 美国과 英国은 西伯林駐屯軍을 減少하는 線에서 蘇聯과의 妥協点을 摸索하자는 意見을 計劃고 西独과 仏蘭西는 蘇聯의 提案을 強硬히 拒否하여 버렸다.[18] 西伯林은 1948年의 封鎖에 이어 다시 한번 難境에 빠지게 되었다. 避難民의 数는 날로 増加하였다. 蘇聯과 東独은 西方側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고 当事国인 西独이 완강히 拒否하

자 西伯林自由化方案에 依한 東独承認策이 実現不可能한 것이라고 判断하였다. 共産策動에 依한 不安으로 避難民의 数만 增加하였고 西伯林은 避難民의 脫出口役割만 하고 있었다. 事態가 이렇게 되자 1961年 蘇聯과 東独은 모스크바에 東欧共産諸国頂上会談을 召集하여 西伯林을 通한 避難民의 脫出退路를 遮断하는 決定을 내렸다.[19]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独逸問題에 관한 蘇聯의 態度는 当初에는 西独이 西方側에 統合되는 것을 妨害하는 戰術로 一貫되어 있었고 그後로는 独逸을 分断함으로서 東西独으로 하여금 並存케 하여 現状을 固着시키자는 蘇聯을 비롯한 東欧共産圈의 安保政策의 一環으로 取扱되었다. 蘇聯의 独逸中立化方案도 西独의 大西洋防衛機構加入을 妨害하는 戰術에 不過하였다. 소련의 의도는 전반적인 欧洲秩序의 現状維持 (Statusquo) 에 있었고 東欧의 기득권 확보와 戰後占領한 모든 領土에 대한 現実認定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一般的으로 1950年代 基民党의 外交戰略은 時代에 알맞는 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反하여 社民党의 対蘇協商을 通한 統一政策을 現実情勢를 度外視하고 蘇聯의 意図를 逆行하는 攻略으로 対蘇協商을 固執하였다는 点에서 하나의 愚를 犯하였다고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50年 後半부터 国際情勢는 또다시 흔들리기 始作하였고 차츰 多極化現状이 抬頭되기 始作하였다. 可恐할 核武器의 破壞力은 美·蘇로 하여금 核実験禁止措置와 軍備縮少를 비롯한 새

로운 問題들을 討議하기 위하여 서로 接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美·蘇의 接近이란 美国으로 하여금 特히 独逸統一問題에 있어서 対西独支援政策을 消極的으로 取扱하도록 強要한 要因이었다.[20]

西独과 日本은 其間 経済大国으로 登場하기 始作하였다. 「드골」은 対蘇接近을 通해서 欧羅巴의 「헤게모니」를 掌握하려고 東奔西走하기 始作하였다. 結局 美国과 仏蘭西가 独逸統一問題에 있어서 統一支援策路線을 離脱하여 버렸다. 1959年 「드골」은 오더-나이세線을 폴란드의 西部国境線으로 認定한다고 正式으로 発表하기에 이르렀다.[21] 東欧圈에서도 多極化現状은 일어나기 始作하였다. 特히 西独과 接近線을 비롯한 特別한 問題를 갖고 있지 않는 支援諸国들은 西独의 経済力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状況에서 「아데나워」政策은 基盤을 잃기 始作하였다.

3.「애어할트」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獨 国內外情勢

1963年「애어할트가」首相職에 推載된 理由는 무엇보다도 그의 経済的 成功에서 由来된 後光의 結果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애어할트는 外交通은 아니였다. 外相「슈뢰더」는「아데나워」밑에서 1962年부터 1963年까지 外相職에 있었던 基民党出身이었다.「애어할트」와「슈뢰더」는 基民党內 新教進歩派에 属하고 있는 人物이었다.

「애어할트」와「슈뢰더」는 새로운 国際情勢에 適応하기 위하여 親美路線은 견지하며 自体安保問題를 解決하고 東欧圈과는 外交関係를 갖지않되 経済分野를 通해서 接近하여 東独을 孤立시킨다는 새로운 政策을 樹立하였다.[22] 이들은 새로운 外交路線에도 不拘하고 根本的으로는 아직도 모스크바와 와싱톤이 独逸統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아데나워」的 信念에 執着되어 있었으며「아데나워」外交政策의 範囲는 完全히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다.

「애어할트와」「슈뢰더」는 그들이 執権하였는데도 不拘하고 基督教는 自党內에서 조차 基盤을 닦지 못하고 있었다. 基民党內部에는 党首「아데나워」를 비롯한 下院議長「겔스텐마이어」外交専門家「폰·구텐벨그와「슈트라우스」等에 依한 旧教保守派가 카톨릭勢力의 基盤위에 確固한 政治的 位置를 굳히고 있었다. 이러한 旧教保守派는「아데나워」가 退任하였는데도 不拘하고 基民党內에서는「애어할트」가

外交에 未熟한 点을 利用하여 아직도 방대한 影響力을 発揮하고 있었다. 이들은 対仏接近을 通해서 独逸問題의 解決策을 찾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旧教保守派는 美国이 独逸問題에 있어서 西独을 支援하지 않을 뿐 아니라 蘇聯과 野合하여 西独을 背反하고 있다고 非難하였으며 西独의 立場에서 보면 欧羅巴의 座標를 부각시키려는 「드골」構想이 더 有利하다는 理由로 親仏路線을 主張하였다. 経済的 側面에서나 軍事的 側面에서도 西独은 欧羅巴諸国과의 関係를 強化함으로써 生存権問題를 自体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다.

独仏中心의 欧洲第一主義는 바로 独自的인 欧洲를 主唱한 欧洲主義者들의 강변이었다.

이와같이 基民党内 旧教保守派는 「애어할트」政府의 対東欧接近 等에 대하여 西独이 東欧共産圏과 関係를 強化하면 蘇聯의 国際的 地位가 強化되어 西独의 対東独立場이 強化된다는 従前의 見解를 固守하여 新政府의 対東欧接近策을 強力히 反対하였다.

그러나 「애어할트」政府는 対美接近을 通해서 北大西洋防衛機構内에서 核武器를 保有함으로서 蘇聯이 西独을 겨누어 配置한 中拒離頭武器에 対応고자 全力을 다 하기로 決定하였다. 美国은 北大西洋防衛機構에 多辺核運을 創設하여 美国이 Veto権을 갖는다는 条件下에 「폴라리스-로켓트」를 供給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同方針에 따르면 英国이 「폴라리스潜水艦을 提供하여 欧洲 多辺核軍의 中枢를 構成한다는 것이다. 仏蘭西는 同方針이 仏蘭西의 安保를 保障할 수 없다는 理由로 拒否하여 버렸고 協調 欧羅巴

独自的인 核軍創設을 企図하였다. 「드골」案은 西独에 依하여 拒否되었다.

「애어할트」政府는 対美交涉을 通한 自体核武器를 保有하기 위하여 1961年부터 1964年까지 25億弗 相当의 武器를 購入하였으며 聯合軍駐屯経費負担으로 10億弗以上의 財政赤字를 惹起시키기에 이르렀다. 美国防長官「맥나마라」는 貿易差를 解消하기 위하여 西独이 더 많은 武器를 購入하여야 된다고 계속 固執하여 양보하지 아니하였고 交涉은 정체되었다. 其外에도 当時 美国은 核拡散禁止問題로 蘇聯과 協調하고 있었으므로 美国 Veto権을 固執하였든 結果로 애어할트政府 計劃은 実用性이 없게 되어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23]

事態가 이렇게 発展하자 1966年에 이르러서는 当時까지의「바르샤바」条約機構의 提案들을 綜合하여 東西欧洲中間地帶에 非核地帶를 設置하고 相互間에 不可侵条約을 締結하자고 하는 対東欧平和攻勢를 取하였고 対東独関係에 있어서는 東独을 正式으로 承認하지 않으나 安保問題와 軍備縮少問題에 대하여 制約없이 相互討議할 用意가 있다고 천명하여 一歩後退하였다.[24]

「애어할트」政府提案에 대한 東独과 東欧共産諸国의 態度는 硬化되었다. 東独을 正式으로 承認하고「오더-나이세」線도 正式으로 承認하기 以前에는 如何한 協商에도 応할 수 없다고 하여 西独의 提案을 一蹴하여 버렸다.

「애어할트」政府의 対東欧関係에서는 若干의 進展이 있었다. 「애어

할트」政府의 対東欧共産諸国에 대한 政策은 東欧共産圏에 多極化現象이 일어나자 外交関係는 樹立하지 않되 西独의 経済力을 基盤으로 하여 通商関係를 樹立하고 通商関係를 強化함으로서 東独을 孤立시킨다는 政策이었다.[25]

그렇게 되면 統一問題에 있어서 東独의 位置가 弱化되고 西独의 位置가 向上된다는 것이다. 一種의 「아데나워」思考方式이다. 이러한 政策에 따라 対東欧接近通路를 開設하기 위하여 발샤바, 부다페스트, 소피아와 부카레스트에 各各 通商代表部를 設立하였다. 그러나 対東欧共産諸国과의 関係도 前記한 바와 같이 以上 더 発展할 수 없었다. 이러한 難境의 裏面에는 蘇聯内部情勢와의 変化가 되어 「브레즈네프」의 強硬派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면 「애어할트」政府의 対蘇関係는 어떠하였든가? 「애어할트가」 하든 当時 蘇聯에는 「후르시쵸프」가 執権하고 있었다. 「후루시쵸프」는 核武器의 可恐할 破壊力에 자극되어 絶対的 平和共存政策을 追求하였다. 「후루시쵸프는」 한편으로는 쿠바危機를 고비로 対美接近을 試図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対西独接触을 企図하고 있었다. 1964年에는 「아드슈베이」가 西独의 対東欧共産圏政策에 대한 真意를 打開하기 위하여 본을 訪問하였다.

뒤이어서 「후루시쵸프」自身도 西独을 訪問하여 対西独協商을 推進하기로 決心하고 있었다.[26] 이러한 「후르시쵸프」의 計劃에 対하여 強硬派 「브레즈네프」와 「수수로프」는 「후루시쵸프」가 対西独関係를 改善하기 위하여 東独을 犠牲시키고 있다고 하여 「후루시쵸프」

路線에 対立하여 闘争하였으며 結局 1964年「후루시쵸프」를 失却시킨後 1966年 7月에는「울부리히트」및「코뮬카」와 協議하여 부카레스트에 東欧共産圏会議를 召集하여 코뮤니케를 発表하고 西独을 包含한 西方側이 東独과 오더-나이세線을 承認하여야 한다는 蘇聯本然의 対西独政策으로 還元하여 버렸다.

1966年「애어할트」政府의 外交政策은 失敗의 絶頂에 이르렀다. 国内的으로는 基民党旧教保守派에 손이 묶여 있었고 社民党과 自民党은「애어할트」政府의 対東欧政策이 消極的이라고 하여 계속 非難하고 있었다. 国際的으로는 対美政策이 失敗로 끝났고 仏蘭西를 度外視하여 独仏関係는 悪化되었고 美国은 対蘇接近의 必要性과 越南問題 및 国内経済問題로 西独에서 対問되어 있었다.[27]

「에르하르트」政府는 受動的이긴 했으나 対東方接近의 探索戦을 試図했다고 볼 수 있다. 1963.10.18 施政演説에서 対蘇関係의 正常化를 図謀하고 東欧와의 관계개선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힌것은

① 漸進的인 冷戦気運의 緩和現象(欧洲中心)

② 東欧의 多中心主義傾向(Policentrism)

③ 西方国들의対東欧 接近의 움직임

④ 社民党의 勢力을 中心으로 한 知識層 学界 青年世代의 輿論에 크게 자극된 것이었다.

예컨대, 1961.11.16 「훔볼트」財団 理事長 Werner Heigeuverg 教授等 多数의 学者들의 研究結果「統一外交政策建議覚書」는 적극

적 対東欧接近을 促求하는 것이었다.

또한, 社民党에 加勢하여 自民党까지도 집요하게 「할슈타인原則의 폐기, 적극적協商論의 바람을 거세게 일으켰을때 「애어할트」 政府가 国論統一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基民党-社民党-自民党代表者 連席会議」를 개최했던 것은 새로운 統一外交를 向한 超党的 団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할슈타인 原則, 領土問題, 核武器保有政策, 東独의 存在認定問題등에는 강경한 입장을 사실상 계속 견지하고 있었다.

(*軍国主義, 복수주의, 新나치즘*의 復活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西独政府에 대한 東方側의 화살을 막을 길은 없었다.)

(참 고)

基民党과 社民党의 大聯政(1966.11.10) 出帆直前 1966.6.17基民党의 院内総務인 Reiner Barzel議員이 뉴욕에서 私案으로써 발표한 「統一論」은 注目을 끌었다.

① 소련과 東独간의 20년간 期限付 通商条約締結을 승인하고 統一独逸内에 소련軍隊의 駐屯을 인정한다.

② 4大国責任대신 「全独専門委員会」를 設置하고 統一方案을 講究한다.

③ 西独内 不法化된 共産党活動의 合法化를 認定한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였다.

이는 将次 南北協商이 진전시 필히 문제로써 제기되는 ③項에 관련 国内法 특히 反共法의 整備문제와 실질적인 共産分子파괴활동 규제를 할 수 있는 事前対備策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재강조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보아야 할 案이라고 볼 수 있다.

4.「키싱거」大聯政의 統一政策과 西独国内情勢

1966年「애어할트」政府가 물러나고「키싱거」를 首班으로 한 大聯政이 構成되었다. 首相「키싱거」는 基民党内 旧教保守派와 新教進歩派 사이에 이루어졌던 妥協의 産物이었다.「키싱거」는 西独下院에서 外交通으로 活躍하다가 其後「바덴-빌렘벨그」州政府의 首班을 歷任하였던 関係로 其間 外交紛争에서 比較的 超然할 수 있었으며 基民党内의 어느 特定派閥에 属하지 아니하였던 関係로 쉽사리 首相에 推戴될 수 있었다.「슈트라우스」는「키싱거」를 支持함으로서 1962年의 슈피겔事件의 悲劇으로부터 再起할 機会를 노리고 있었다. 社民党은 政策路線이 다르고 失政을 거듭한 基民党과의 聯政을 反対하였으나「부란트」가 副首相과 外相職을 맡는다는 條件으로 聯政에 参与하기로 決定하였다. 現首相「슈미트」는 当時 軍事専門家였기 때문에 国防相職責을 希望하고 있었으나「부란트」가 外相職責을 맡게 되었으므로 前外相「슈뢰더」에게 国防職責을 양보하였고「슈트라우스」는 財相職을 차지하였다.「키싱거」内閣은 大体的으로 보아 基民党内 旧教保守派 新教進歩派를 비롯한 中立主義者「하이네만」, 民権主義者「폰·핫젤」, 知識層을 代表하는「칼로 슈밀트」, 財閥의 支持를 받는「슈묵거」 등 雜多한 勢力의 複合体였다. 이러한 複合体에서「키싱거」는 首相으로서 政策一般에 대한 最終決定権을 갖고 있었으며「부란트」는 外相으로서 外交政策을 左右할 수 있는 操縦간을 잡고 있었

다. 強力한 外交政策이란 始初부터 期待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8]

「키싱거」大聯政의 急先務는 当時 緩和되어 가는 国際情勢에 適応하기 위하여 実利的이고 積極的인 外交路線을 確立하고 「애어할트」政府에 依하여 墜落된 西独의 地位를 다시 向上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우선 軍事安保問題와 統一政策問題를 結附시키지 않고 別途로 推進시키는 方案을 採択하였다.

対東欧政策도 積極的 姿勢로 臨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리하여 1967年에는 単独代表権을 臨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리하여 1967年에는 単独代表権을 廃止할 수는 없으나 東独을 事実上 存在하는 政権으로 受諾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하였고 東独과 東西独間의 旅行問題를 비롯하여 経済, 社会, 文化等 諸分野에 있어서 関係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討議하자고 提案하였다.[23] 이 提案은 東独을 孤立시키겠다고 하든 「애어할트」政府의 外交政策에서 一歩 前進한 것이었다. 할슈타인原則에 対해서도 이 原則을 東欧共産諸国에는 適用하지 않기로 하였다. 一種의 後退였다. 애어할트의 対東欧接近政策이 東独을 孤立시키기 위한 対東欧通商政策이었다면 「키싱거」大聯政의 対東欧接近政策은 属地主義的 性格을 띠운 할슈타인原則의 縮少版이었다.

할슈타인原則의 縮少版은 西独이 東欧共産諸国을 承認할 때 才三国이 大量으로 東独을 承認하게 되어 西独이 占領하고 있던 高地를 빼앗기게 됨으로 이러한 경우에 対備하기 위한 豫備策으로 考

案된 措置였다.

1966年에는 우선 문헨條約의 無効를 宣言하였다. 1967年 正月에는 루마니아와 正式的 外交関係를 樹立하였고 유고슬라비아와는 1968年에 正式外交関係를 再樹立하였다. 対東欧政策이 活気를 찾고 있었다.

이러한 趨勢를 바라보고 있던 캄보디아가 東独을 承認하였다. 할슈타인縮少版이 適用되어야 할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西独国内情勢는 如意치 아니하였다. 外相「부란트」가 反対하였다. 할슈타인 原則이 継続 適用되는 西独은 国際的 孤立을 免치 못할 것이라고 警告하고 이것은 이미 時効가 지난 歷史的 遺物에 不過함으로 当然히 파기되어야 한다는 見解를 彼歷하였다. 이에 反하여 基民党 旧教保守派는 버마, 라오스 등 印支諸国이 이와 같은 先例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反対하였다. 妥協点이 나왔다. 結局 西独大使만을 召換하여 外交関係를 格下한다는 線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키싱거」大聯政이 執権始初부터 이렇게 積極的 姿勢로 対東欧政策을 推進하자 東独은 이와같은 趨勢를 逆利用하여 逆할슈타인 原則을 創出하였다.

西独이 東独을 承認하고 現在 国境線을 認定하며 核武器를 포기하기 以前에는 모든 社会主義国家는 西独과 外交関係를 締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蘇聯과 協力하여 이 案을 1967年 2月10日 바르샤바條約機構外相会議에 附議하였다.[24]

東欧国家들중에서 가장 西方側과 交流가 빈번하고(특히 美国, 유고와 더불어 比較的 独自路線을 걷고 있으며, 現実主義的인 国家인 루마니아는 西独의 対東方政策에 큰 活力素가 되었다고 評価된다. 蘇聯과 中共을 접근하는 우회전략의 일환으로써 東欧를 겨냥한 東欧国家와의 関係改善努力(韓国)은 우선적으로 루마니아와 유고등을 선정(우선순위)하여 끈질기게 外交努力을 投入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比較的 中立路線을 択하고 西独과 이미 外交関係를 樹立한 루마니아가 強力히 反対하였든 関係로 逆할슈타인 原則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独은 이 方案을 貫徹하기 위하여 逆할슈타인 原則을 継続 固執하였다. 其後 부카레스트에서 바르샤바條約機構会議가 召集되었을 때 東独은 同会議를 利用하여 모든 社会主義国家는 西独과 外交関係를 締結할때는 上記 東独의 逆할슈타인 原則을 貫徹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事項을 共同코뮤니케에 挿入시키는데에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 事項은 一種의 義務條項으로 採択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東独의 努力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東独은 칼스바트会議에서 같은 要求事項을 再強調한 나머지 社会主義国家가 西独과 外交関係를 樹立할 때는 西独이 現存国境線을 認定하여야 하며 核武器를 抛棄하여야 한다는 것을 條件으로 提議하기로 合意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単独代表権만을 西独 스스로가 抛棄하도록 勧告한다는 線에서 落着되었다. 「키싱거」大聯政은 対蘇関係도 改善할려고 努力하였다. 蘇聯은 「애어

할트政府가 核武器保存計劃을 推進하고 있을 때 이것을 커다란 威脅으로 看做하고 있었다. 「키싱거」大聯政은 이 問題에 대하여 蘇聯과 討議하자고 提議하였다. 会談은 1967年末에 始作되었다. 会談이 始作되자 蘇聯의 態度는 硬化되었다. 西独이 東独을 承認하는 問題 그리고 西独이 오더-나이세線을 承認하는 問題까지도 一括討議하자는 強硬姿勢로 変하여 버렸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蘇聯이 二次大戦 戦勝国으로 西独内에서 軍国主義와 나치主義가 復活하지 않도록 監視할 権利가 있다 하여 이 問題도 같이 討議되어야 한다고 버티었다.[25] 「키싱거」大聯政의 対蘇外交는 一切 주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키싱거」大聯政의 対蘇外交는 1968年 또하나의 一大転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同年 8月 蘇聯은 체코를 侵攻한 것이다. 武力行使를 무릅쓰고 現狀을 固着시켜야 한다는 執念에서 나온 것이다.

蘇聯安保体制에 威脅이 되기 때문이다. 自体安保를 위하여 緊要한 東独과 폴란드 및 체코의 움직임에 언제나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蘇聯의 立場이었다. 「키싱거」大聯政은 蘇聯의 체코侵攻을 通하여 東欧圏問題에 대한 関鍵를 아직도 蘇聯이 쥐고 있다는 事実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외에도 西独이 核武装을 하게 될 경우 蘇聯과 아무런 妥合도 할 수 없다는 事実도 알게 되었다. 東欧圏問題는 蘇聯과의 양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見解에 따라 東欧-蘇聯-東独이란 従前의 西独政策도 蘇聯-東欧-東独이란 政策으로 転換되어 蘇聯과 一括妥決된다는 方向을 잡게 되었다.[26]

1969年에는 蘇聯의 外交政策도 또한 一大転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中蘇紛争이 両国国境地方에서 激化되었다. 蘇聯의 対西欧関係를 早速히 調整하여 対中共姿勢를 再整備하지 않으면 안된 必要性이 생긴 것이다.[27]

欧洲에 있어서의 現狀維持는 蘇聯国家利益의 決定的 要素가 되고 있음이 明白한 것이었다.

이는 비단 欧洲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현상유지(영토문제와 정치판도문제) 역시 勢力均衡原理에 立脚하여 他列強들이 保障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봐야한다. (물론 팽창주의적인 형태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分断現狀問題도 이런 視角에서 재음미 한다면 北傀의 反共存政策의 모순과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실천해 나가야 함을 절감케 된다.

5. 西独의 対東欧政策
(Ostpolitik)

西独의 対東欧政策은 1966年 「애어할트」政府에 依해서 始作되었다. 「애어할트政府는 当時 東独을 除外한 東欧共産諸国에 平和覚書를 発送하여 紛争解決策으로서의 武力을 抛棄하자고 提議하였다. 이렇게 発端된 西独의 東欧政策은 「키싱거」大聯政에 依해서 継続 強化되었고 「부란트」의 社民党 政府에 依해서 完結되었다. 「애어할트」政府나 「키싱거」大聯政의 東欧政策은 이미 記述하였다. 다음은 「부란트」社民党 政府의 東欧政策을 簡単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란트」의 社民党은 1959年 2月 「칼로·슈미트」를 団長으로 한 対蘇使節団을 모스크바에 派遣하여 社民党의 独逸中立化에 대하여 蘇聯의 意図를 打診한 結果 蘇聯은 安保政策的 考慮에서 独逸 統一을 全的으로 反対하고 있을 뿐 아니라 当時의 欧羅版図를 関係当事国間에 條約을 締結하여 現状固着시키고자 企図하고 있는 事実을 確認하였고 其後 一連의 対東欧共産諸国과의 接触과 蘇聯의 対東欧政策을 通해서 現状固着이 이루어지지 않고 武力을 抛棄하지 않는 限 西独의 対東欧政策은 成功하기 어렵다는 結論을 얻었고 独逸統一이 가까운 將来에 完遂될 展望이 없다고 判断하였다. 또한 당장 解決될 수 없는 이러한 問題로 人間의 尊厳性과 実質的 内面生活이 犠牲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見解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独逸의 統一과 独逸民族의 自決権을 抛棄하여서도 안된다

는 것이다. 独逸民族의 自決権을 継続保有하고 自決権에 依한 独逸統一을 追求하면서도 人間의 内面生活의 充実을 期하자는 現実的 考案이 「부란트」의 対東欧平和共存政策인 것이며 이러한 現実的 要請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에 依한 対立은 克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信念이었다.[28] 이러한 構想을 綜合定立하여 1968年 10月 西独議会에서

1) 欧羅巴 平和保存
2) 独逸民族의 自決権과 統一性의 確保
3) 独逸民族 相互間의 分断関係를 克服한 並存関係를 넘어서 相互協力関係까지의 発展的 接触
4) 東西独間의 非外国的特殊関係樹立
5) 武力抛棄라고 하는 所謂 独逸政策目標를 発表하기에 이른 것이다.[29] 그리고 1969年 10月 28日에는

① 두개의 国家가 独逸에 存在하는 事実을 認定하며
② 四強의 権利와 義務를 継続尊重하고
③ 核武器拡散禁止條約을 署名할 것이라는 西独社民党政府의 立場을 闡明하였다.

其後 「부란트」社民党은 1970年初에 「애곤·바」内独相을 모스크바에 派遣하여 蘇聯政府와 東独을 包含한 東欧問題를 一括妥結하였다. 1970年 8月에는 独逸問題에 대한 責任을 지고 있는 四強代表에 政府覚書를 伝達하고 西独이 締結할 東欧條約과 東西独合意事項은 四強의 責任과 義務에 抵触되지 않는다는 経由를 밝혔다. 이에

대한 四強의 反応은 肯定的이었다. 四強中 如何한 国家도 反対하지 아니하였다.[30] 其間 国際潮流는 欧羅巴의 現狀固着에 依한 実利的 平和共存策으로 転換되어 있었다. 「부란트」의 東欧政策은 이러한 点에서 解決展望이 없는 諸問題点을 未決問題로 文書하기로 合意한 後 現狀을 固着시킨 時代的 要請에 対応한 産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란트」의 東欧政策結果는

(1) 欧羅巴諸国의 現存国境線의 認定과 東独承認

(2) 経済, 科学, 技術, 文化 등 其他 諸分野에서의 協力

(3) 東西交流의 橋梁設置

(4) 東西独 同時유엔加入이라고 大体的으로 評価할 수 있을 것이다. 西独은 이와 같이 対東欧関係를 調整하고 유엔을 通한 世界舞台에로 가는 基盤을 構築하였고 蘇聯은 対아시아 進出을 위하여 유럽 安保協力会를 通한 対西欧羅巴安全策을 試図할 수 있는 出発点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randt 首相의 東方政策의 出発点(哲学)은 무엇인가? 그는 「欧洲의 平和政策」(Friedenspolitik in Europa)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現狀(status quo)에서 出発해야 한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自然과 理性에 背馳되며 未来発展을 위한 希望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現実을 外面하거나 現実과는 相馳되는 "바람직한 思考에서" 既存狀況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緊張狀態로부터 平和의

길로 現狀을 変化·改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武力行使 없이 達成될 수 있다. 그것은 곧 関係当事国의 合意에 의해서만이 可能한 것이다."

※ 韓半島問題에 있어서 休戦当事国会談案과 拡大会談案(関聯4大国+南北韓) 역시 이러한 現実認識에서 出発해야 함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고 본다. (分断의 背景 過程은 다르나 現実認識과 解決方向의 思考는 비슷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6. 独逸法統性 및 統一性에 대한 東西独立場과 東西独基本条約

戦争結果를 国際法上 規定하고 解決策을 講究하는 節次는 講和條約이다. 独逸의 경우에는 二次大戦終了後 全体로서의 独逸과 戦勝国間에 講和條約이 締結되지 못하였던 関係로 独逸 全体에 대한 責任은 1945年 8月의 포츠담決議에 따라 四強이 지고 있다.

이러한 緣由에서 独逸의 法統性과 統一性問題도 東西独이 各各 自身의 立場에 따라 相異한 見解를 主張하고 있다.

西独側主張에 따르면 独逸帝国은 1945年의 降服으로 完全히 消滅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存続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西独이란 独逸帝国의 一部가 国家的 側面에서 새로히 組織된 것이라고 看做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西独이란 独逸帝国과 全然 無関한 새로운 国家라고도 볼 수 없으며 独逸帝国의 法的 後継者도 아닌 것이다.

即, 旧帝国의 一部가 새로히 組織되어 새로운 自身의 法的 行爲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現在의 特殊事情으로 말미암아 独逸全体에 대한 組織과 独逸全体에 대한 政治的 行爲能力을 択하고 있다는 것이다.[32] 이러한 不完全한 部分은 議会와 聯邦政府를 包含한 모든 西独의 国家機関이 自身의 裁量에 따라 最善의 方法으로 研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3]

東西独基本條約은 이 論理에 따라 事実上 存在하는 두개의 国家

사이에 締結된 것이므로 国際法上의 條約이라고 볼 수 있으나 其実은 하나의 独逸이라고 하는 全体 가운데에 内在하는 두개의 下部組織 사이에 締結된 것이므로 国内法的 契約과 같은 一面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独間에는大使館을 交換하는 것이 아니라 代表部를 交換할 것이며 大使를 交換치 않고 全権代表를 交換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條約効力의 発生問題에 대해서도 같은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聯邦大統領의 委任에 따른 批准文書를 交換한 것이 아니라 政府가 作成한 覚書를 交換한 것이며 東西独間의 交易에 대해서 関税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부란트首相은 1969年 10月28日字 政府声明에서 基本法의 命하는 바에 따라 統一性을 維持強化하기 위하여 東西独間의 交流를 増進할 必要가 있다고 力説하였다.

東独은 1945年부터 1949年까지는 独逸帝国은 滅亡한 것이 아니라 存続하며 다만 戦勝聯合国이 포스담協定으로 独逸이란 国家를 引受받은 関係로 国家権力이 占領国에 引継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34] 「웃도 그레태볼은 1949年 3月19日 東独人民議会에서 1948年 6月8日字 런던決議에 따라 西方側에 独逸을 不法的으로 分割하였기 때문에 1949年 10月7日에 制定된 東独憲法이 西独

에도 有効하고 나아가서 国家法律的 法統性을 主張할 수 있다고 갈파하고 東独과 独逸帝国은 合致되는 同一体이며 国際法上의 同一한 主体라고 主張하였다.[35]

東独의 이러한 主張은 1953年부터 漸次 独逸内에 두개의 国家라고 하는 一民族二国家論으로 기울기 始作하였다. 이와같이 論理를 変更시킨 理由는 무엇일까? 西独政府는 1950年 3月22日 独逸統一의 手段으로서 유엔監視下의 全独逸自由選挙를 実施하자고 提唱하였다. 이와 같은 西独政府要望에 따라 西方側은 유엔事務総長에 대하여 独逸内 自由選挙의 前提条件을 調査할 国際委員会 設置에 관한 事項을 議事日程에 넣을 것을 要求한 結果 才5次 유엔総会는 유엔監視委員団을 自由選挙実施可能性 確認次 独逸에 派遣키로 1951年 12月 20日에 決議하였으며 同決議에 따라 派独되었던 委員団은 1952年 3月까지 西独에서 任務를 마치고 東独에 入境하려고 하였으나 蘇聯의 拒否로 挫折되고 말았다. 東独을 分離하여 蘇聯安保를 위한 防波堤로 삼고자 한 術策에서 나온 것이다.[36]

1953年 9月 17日 「울부리히트」는 才16次 東独共産党 党大会에서 独逸에는 두개의 国家가 存在한다고 主張하였고 其後 「옷토 그레테볼」도 類似한 発言을 하였다.[37] 従前에 主張하던 東独이 独逸帝国을 継承하였다는 論理를 번복한 것이다. 即, 独逸帝国은 1945年 5月 나치独逸의 滅亡으로 消滅되었고 国家権力은 聯合国에 一但, 引受되었다가 其後 独逸領土에 두개의 国際法的 個別国家가 새로히 樹立되었다고 主張하였다.[38] 東独은 1968年 4月6日에는 新憲法

을 制定하여 才8條에서 「民主主義와 社会主義의 基盤下에서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二個의 独逸国家는 努力한다」라고 規定함으로서 同等한 二個独逸国家의 存在를 法的으로 明確히 設定하였다.

同憲法前文에는 「全独逸民族에게 平和로운 社会主義로 가는 길을 提示하여야 한다는 責任感에서 東独国民은 本社会主義憲法을 制定하였다」고 記述되어 있다. 即, 東西独은 하나의 民族이란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밟아서 東独은 「一民族二国家論」을 確立한 것이다.

一民族二国家論은 同憲法 才1條規定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바 同規定은 東独을 独逸民族의 社会主義国家라고 定義하고 있다.

1968年의 東独憲法은 또한 独逸統一性問題에도 言及하고 있다. 同憲法 才8條 2項은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東西独이 相互間의 関係를 正常化하여 相互間에 協力하여야 한다고 言及하고 나아가서 東独과 東独国民은 独逸帝国主義(西独)에 依하여 強要된 独逸分断을 克服하고 漸次的으로 二個의 独逸国家가 社会主義 原則에 따라 接近하도록 尽力하여야 한다고 하여 独逸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1970年代에 이르러 東独은 二民族二国家論을 発展시키고 있다(社会主義独逸民族과 資本主義民族). 東独의 位置가 確保된 것이다. 東独의 国境線은 不可侵的이라고 認定받게 되었다. 「울브리히트」는 1970年 12月 17日 東独共産党 才25週年을 맞이하여 「푸롤레타리아」階級이 政権을 占領하고 이제는 하나의 国民国家로 発展되고

있다고 主張하였으며 이 国民国家는 하나의 社会主義国家로서 「부르조아」와 労動階級間의 矛盾에 依하여 国家問題가 決定되는 西独과는 全然 相異할 뿐아니라 西独보다 훨씬 優越한 国家라고 하여 東独이 西独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39]

統一論理가 舞台後面으로 물러나고 階級을 앞세우게 된 것이다.

独逸聯盟을 構成하자는 主張을 東西独은 全然 相異한 存在라는 論理로 自己立場에 따라 飛躍시킨 것이다. 東独社会主義統一党(共産党)書記長 「호네카」도 이와 같은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는 1972年 11月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独逸統一問題에 대하여 이 問題는 問題로서의 価値가 없다고 一蹴하여 버렸다. 東独은 東独대로 社会主義共同体에 統合되어 버렸고 西独은 西独대로 西方防衛体制에 編入되어 있어 歴史는 이미 決断을 내려 버렸다는 것이다. 東西独을 分離시켜 欧羅巴現狀固着이란 共産側政策이 結実되었다는 意味이다.

東独의 이 見解는 明白한 国際法違反이다. 全体独逸問題는 戦勝四強의 責任問題에 属한 것이다. 其外에도 東西独이 歴史的으로 보아서 한民族 한国家였다고 하는 事実은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東独은 歴史를 歪曲하고 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民族」의 概念規定問題는 分断国의 両部分이 民族史的 正統性問題를 위요한 競争過程에서 중요한 命題가 되고 있다. 民族을 階級과 「이데올로기」的 次元에서 접근하는 共産主義者들의 民族史觀에

대한 理論的, 実際的 규명이 東西独과 南北韓의 경우를 比較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分断狀態가 계속되는 한, 民族의 問題는 永遠히 問題의 問題로써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7. 맺는 말

끝으로 欧羅巴에서는 어떠한 條件下에 平和定着이 可能하였으며 韓半島는 어떠한 狀況에 있는가 簡単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欧羅巴에는 北大西洋防衛機構와바르샤바條約機構間에 勢力均衡이 確保되어 있었다. 따라서 紛争이 発生할 경우 核戦争의 可能性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軍事的으로 衝突할 念慮는 거의 없었다. (지역불럭간의 군사적균형의 존재) 그러나 韓半島의 경우는 特히 軍事的 勢力均衡이 欧羅巴의 경우와 같이 完全하지 못하다. 北傀는 中蘇와 各各 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으나 韓国은 美国하고만이 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으며 日本은 日本自体의 防衛도 美国에 依하고 있는 実情이다. 그리고 또한 韓半島에 紛争이 発生할 경우 美国의 自動介入이 條約上 保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美·蘇·中·日의 四強関係가 相互間에 얽혀 있어 相互 紛争抑制作用을 한다고는 하나 欧羅巴의 경우처럼 堅固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不充分한 部分을 補充하기 以前에 越南의 경우처럼 形式上의 合意事項만을 남겨두고 性急한 緊張緩和政策을 追求하는 것은 많은 危険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西独은 東独과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莫強한 経済的 実力을 所有하고 있었으며 軍事的 潜在力을 保有하고 있었으므로 西独이 核武装을 할 경우 東欧圏内에서 여기에 対応할만한 나라가 없었고 蘇聯의 安保에도 적지아니한 威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미코」가 쏘비에트聯邦最高会議에서 蘇聯이 西独과 武力抛棄條約을 맺음으로써 西独으로부터의 威脅을 除去할 수 있었다고 한 그의 意見을 彼歷하였던 事実은 이와 같은 狀況을 雄辯한 것이라고 解釈하여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西独은 独自的으로 西欧羅巴와의 統合을 推進하면서 東欧共産圈과 自体의 힘으로 緊張解消를 追求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韓国의 境遇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韓国은 美·日과의 유대를 強化하고 西方自由陣営이 広大한 影響力을 利用하여 第三世界 및 非敵性共産諸国과의 関係改善을 積極推進하여 韓国이 国際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国内的으로는 自主国防力을 強化하고 安保態勢를 견고히 굳혀야 할 것이다(国力의 강화 拡大努力의 必要性).

세째로 東西独接近過程에서 参考할 点은 우선 非政治的 分野에서부터 相互交流가 発端하여 理解가 増進된 後에 政治的인 分野로 점진적으로 発展하였다고 하는 事実이다. 뿐만 아니라 西独이 東独을 아직도 国際法上 承認하지 않고 東独의 地位 変化에 細心한 注意를 기우려 対東独関係를 内独関係로 規定하고 있다는 事実에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一民族二国家論의 分断国特殊法理論의 創出은 우리에게 많은 暗示를 준다. 将次 韓半島에 있어서 実質的인 政治的 民族共栄의 平和共存秩序가 定着되면서 統一을 指向한 民族内部의 努力을 論理的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유엔加入問題와 2国家問題에도 불구하고 統一国家를 위해 統一民族国家의 像을 그릴 수 있는 韓国的 特殊法理論의 創案이 하나의 重要한 政治法律的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8 . 附錄

애어풀트会談東独側提案

1 . 国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平等関係를 樹立하며 西独은 単独 代表権을 破棄한다.

2 . 各各 相対方의 外交政策에 干渉치 아니한다.

3 . 유엔憲章 24條에 따라 各各 相対方을 国際法上의 主体로서 認定하고 領土保全의 原則을 遵守하며 相対方国境線의 不可侵性을 尊重한다.

4 . 同時에 유엔에 加入한다.

5 . 核武装을 抛棄하며 各自 軍事費를 半減한다.

6 . 二次大戦으로 因하여 発生한 諸般 残留問題를 討議한다.

7 . 西独의 対東独負債清算問題와 賠償問題를 調整한다.

애어풀트会談西独側提案

1. 独逸의 統一을 抛棄하지 않으며 東西独은 相互間 外国이 될 수 없다.

2. 모든 国際法上의 原則을 遵守하고 모든 差別待遇를 排除하며 領土保存을 尊重하고 모든 紛争은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各自 相対方의 境界線을 尊重한다.

3. 各自 相対方의 社会体制에 干渉하지 않는다.

4. 相互間 善隣的 協力을 增進하며 技術協調를 위한 政府間 会議에 따른 方案을 講究한다.

5. 独逸과 伯林에 관한 四強의 権利와 義務는 従前과 다름없이 遵守한다.

6. 伯林의 地位改善에 관한 四強의 努力을 支持한다.

캇셀 會談西獨側 20個討議案件

1. 東西独은 各自憲法에 統一을 志向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統一志向을 政策目的으로 設定하고 있는 雙方은 独逸民族의 平和와 団結을 위하여 東西独関係를 調整하고 모든 不利한 条件을 除去하여 東西独国民의 接触条件을 改善하는 条約을 締結할 것에 合意한다.

2. 前記条約은 立法機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3. 雙方은 各自 人権尊重, 互恵平等과 平和共存 및 相互無差別等諸原則에 立脚한 関係를 国家之間(Zuischemstaatlich)의 一般原則으로 受諾할 意思를 表明한다.

4.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抛棄하며 相互間의 諸問題를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相対方의 領土保全을 위하여 各自의 境界線을 尊重한다.

5. 相互間에 各自의 独立性과 主体性을 尊重하여 相対方 内政에 干渉하지 않는다.

6. 雙方은 各自 相対方을 代表할 수 없다.

7. 締結当事者는 如何한 戦争도 独逸領土에서 発生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事実을 엄숙히 宣言한다.

8. 雙方은 온 人類의 平和共存을 威脅하는 一切의 行動을 中止할

義務를 진다.

9. 雙方은 欧羅巴 安全保障에 도움이 되는 軍備縮少와 軍備制限을 위한 努力을 支持한다.

10. 雙方이 将次 締結할 条約은 二次大戰의 結果로 나타난 独逸의 一民族 二国家라고 하는 特殊事情을 前提条件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11. 포스담宣言에 規定된 全体로서의 独逸과 伯林에 대한 四強의 権利와 義務는 存続한다.

12. 独逸과 伯林에 대한 四強合意事項은 尊重한다. 西独과 西伯林 사이의 連関関係도 이를 尊重한다. 雙方은 西伯林内外状況의 正常化를 위한 四強의 努力을 支援한다.

13. 雙方은 両国立法府사이에 어떠한 分野가 衝突의 要因이 될수 있는 点을 検討하여 両国国民에게 不利한 要件을 除去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但, 両国主権은 各自 自己領土에 局限한다.

14. 将次 雙方이 締結할 条約은 雙方内의 旅行条件을 改善하고 移転의 自由를 保障하는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家族分断을 解決하는 対策을 講究한다.

16. 接境地域에서 発生하는 問題는 善隣精神에 立脚하여 解決한다.

17. 雙方은 交通 通信과 情報交換, 科学과 教育, 文化와 体育 및 環境浄化等 諸分野에서 相互協力하여 이를 具体化시키기 위하여

서로간에 討議한다.

18.內独交易에 관해서는 現存協定과 合意事項을 遵守하며 交易関係는 継続 拡張한다.

19.雙方政府는 閣僚級 全権代表를 任命하며 同全権代表의 代理者가 勤務하는 事務処를 設置한다. 全権代表와 그의 代理者의 管掌事務는 具体的으로 規定한다.

全権代表와 그의 代理者가 相対方政府所在地에서 活動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고 또한 모든 便宜를 提供하며 이를 保障한다.

20.雙方은 将次 締結할 条約에 根拠하여 雙方이 모든 国際機構에 加入하고 活動할 수 있는 前提事項을 調整한다.

바 — 文 書 (Bahr-Papier)

(西獨과 蘇聯間의 東欧問題에 대한 合意文書)

1.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소비에트合衆共和国은 国際平和의 維持 및 緊張解消를 第1次的 政策目標로 看做한다. 雙方은 欧羅巴 現状을 基準原則으로 定立하고 그 原則밑에서 欧羅巴諸国間의 平和를 図謀하기 위하여 欧羅巴에서의 諸般関係 正常化를 增進하도록 努力한다.

2.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소비에트合衆共和国은 相互関係에 있어서 그리고 欧羅巴安全保障問題에 있어서 유엔 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따라서 雙方은 모든 紛爭을 全的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고 欧羅巴安全問題에 있어서 그리고 雙方相互関係에 있어서 유엔 憲章 第2条에 따라 武力에 依한 威脅과 武力 使用을 삼가할 義務를 진다.

3. 소련과 独逸聯邦共和国은 欧羅巴에 있어서의 平和가 現存国境線이 維持되어야만 保存될 수 있다는 데에 合意한다. 雙方은 欧羅巴諸国의 現存国境線에 依한 領土保存을 全的으로 尊重할 義務를 진다. 雙方은 如何한 国家에 대하여서도 何等의 領土的 要求를 갖고 있지아니하며 未来에 있어서도 領土的 要求를 提起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4.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쏘비에트合衆共和国間의 協定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한 雙務的 또는 多辺的 諸条的과 協定에 抵触되지 않는다.

5. 独逸聯邦共和政府와 社会主義 쏘비에트合衆共和国政府間에는 雙方이 将次 締結할 正式条約과 独逸聯邦共和国이 社会主義国家 特히 独逸民主共和国, 폴란드人民共和国 및 체코슬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国과 締結할 条約이 劃一的인 単一体라고 하는데에 諒解가 成立 되어 있다.

6.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과 平等하고 그리고 拘束力이 있는 通常国際条約을 締結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雙方이 締結할 이 条約은 雙方이 第三国과 一般的으로 締結하는 条約과 同一하여야 한다.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全的으로 無差別하고 平等한 原則에 立脚하여 그리고 両者의 国境안의 内部権限에 관한 各自의 独立性과 主体性을 尊重하는 原則에 立脚하여 相互関係를 発展시킨다.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両者中 어느 政府도 相対方을 外国에서 代表할 수 없으며 相対方의 名義로 行動할 수도 없다는 原則에 立脚하여 両者의 対三国関係가 形成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受諾한다.

7. 独逸聯邦共和政府와 社会主義소비에트合衆共和国政府는 欧羅巴緊張緩和 過程에서 欧羅巴諸国 特히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関係를 改善하기 위하여 各自의 立場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이 유엔과 그 傘下 特別機構에 加入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할 用意가 있음을 闡明한다.

8. 独逸聯邦共和国政府와 社会主義소비에트合衆共和国政府間에 문헨条約을 無効化시키기 위한 問題가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슬로바키아 社会主義共和国 雙方이 容納할 수 있는 形態로 調節되여야 한다는데 諒解가 成立되어 있다.

9. 独逸聯邦共和国政府 社会主義소비에트合衆共和国政府는 両国의 利益을 위하여 그리고 欧羅巴의 平和를 鞏固히 하기 위하여 両国間의 経済, 技術, 文化, 其他 諸分野의 関係를 継続 発展시킨다.

10. 独逸聯邦共和国政府와 社会主義소비에트合衆共和国政府는 欧羅巴의 安全과 協力을 鞏固히 하는 問題에 대한 会談計劃을 歓迎하며 同計劃을 準備하고 成功裡에 実践하기 위하여 各自 努力한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쏘비에트合衆共和國의 條約 (1970年8月12日)과 獨逸統一性에 관한 獨逸聯邦政府 公翰

I.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쏘비에트合衆共和間의 條約 (1970年8月12日)

兩締結当事者는

欧羅巴와 온 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鞏固히 하기 위하여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国家之間의 平和的 協力이 모든 民族의 切実한 要望과 国際平和의 一般的 利益에 一致된다는 信念을 갖고

雙方이 以前에 合意한 措置 特히 雙方이 1955年9月13日에 樹立한 外交関係가 雙方相互間의 関係를 継続 発展시키고 鞏固히 하는데 必要한 새로운 措置를 講究하는데 有利한 条件을 이루고 있다는 事実을 높이 評価하여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経済, 科学, 技術, 文化等 諸分野에 있어서 雙方의 協力을 改善強化하기 위한 各自의 決心을 条約形態로 表現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쏘비에트合衆共和国은 国際平和의 維持와 緊張緩和의 達成을 各自 自身의 重要政策 目的으로 看做한다.

雙方은 欧羅巴의 現状을 그러한 努力을 위한 基調로 삼는다.

第2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쏘비에트合衆共和国은 雙方相互間의 関係에 있어서나 欧羅巴의 安全과 国際間의 安全을 保障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따라서 雙方은 모든 紛争을 全的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欧羅巴의 安全과 国際間의 安全에 関係되는 問題에 있어서 또는 유엔 憲章 第2条에 依한 相互間의 関係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할 義務를 진다

第3条 上述한 目的과 原則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쏘비에트合衆共和国은 欧羅巴에 있어서의 平和가 全的으로 現存国境線 如何한 者에 依해서도 侵害되지 않을 境遇에만 保存될 수 있다는데에 合意한다.

雙方은 欧羅巴諸国의 現存国境線에 따른 領土的 保存을 全的으로 遵守할 義務를 진다.

雙方은 如何한 領土的 要求도 갖고 있지 않으며 未来에 있어서도 如何한 領土的 要求를 提起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雙方은 本条約의 署名日을 基準으로 하여 現在나 未来에 있어서도 폴란드人民共和国의 西部国境線을 構成하고 있는 오더-나이세線과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의 境界線을 包含한 모든

欧羅巴諸国의 国境線이 不可侵的인 것이라고 看做한다.

第4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쏘비에트合衆共和国間의 本条約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한 雙務的 또는 多辺的 条約이나 合意事項에 抵触되지 않는다.

第5条 本条約은 批準을 必要로하며 批準文書를 본에서 交換하는 날에 効力을 発生한다.

本条約은 独逸語와 露語로 各各 二通의 原文으로 1970年 8月12日에 모스크바에서 締結되었다. 独逸語와 露語原文은 同一한 効力을 갖는다.

独逸聯邦共和国
全権代表
빌리·부란트
발터·셸

社会主義쏘비에트合衆共和国
全権代表
A·코시긴
A·그로미코

II 獨逸統一性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政府公翰

(1970年8月12日)

聯邦政府는 蘇聯外務省에서의 条約署名에 즈음하여 下記公翰을 手交하였다.

尊敬하는 長官!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쏘비에트合衆共和国間의 条約署名과 関聯하여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本 条約이 独逸民族의 自決権에 依한 独逸民族의 統一이 이룩될 수 있는 欧羅巴平和를 위하여 努力할 独逸聯邦共和国의 政治目的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事実을 確認하는 栄光을 갖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 条約에 表明하지 못한 統一問題를 公翰形式으로 表示하여 根拠를 남김 발터·셀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間의 相互關係 正常化條約 (1970年12月7日)

独逸聯邦共和国과 폴란드人民共和国은

欧羅巴諸 民族에게 極甚한 苦難을 招来하고 폴란드를 第1次로 犠牲시킨 世界第2次大戰이 終了된지 25年이 経過하였다는 事実을 考慮하여

其他 両国에는 平和로운 将来를 保障받아야 할 新世界가 成長하였다는 事実을 勘案하여

両国間에 正常的이고 善隣的인 関係가 発展할 수 있고 平和的인 共存이 이룩될 수 있는 永続的 根本原則을 講究하여야 할 要望에서

欧羅巴에서 平和와 安全을 固着시킬 努力의 一環으로

現在国境線内에 있어서의 欧羅巴諸国 国境線의 不可侵性과 欧羅巴 諸国 → 領土保存과 欧羅巴諸国主権의 尊重이 平和를 위한 根本的意義를 갖고 있다고하는 것을 認識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폴란드人民共和国은 1945年 8月2日字 포츠담会議 決議文 第4章에 規定된 오더-나이세線이 폴란드人民共和国의 西部国境線을 構成한다는 것을 異議없이 確認한다.

② 雙方은 経済，科学，技術，文化，其他 諸分野에 있어서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雙方의 協力을 強化하는데 同意한다.

③ 雙方은 相互間에 如何한 領土的 要求도 갖고 있지 않으며 未来에 있어서도 如何한 領土的要求를 提起하지 않는다는 것을 宣言한다.

第2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폴란드人民共和国은 雙方의 相互関係에 있어서나 欧羅巴 및 世界安全保障問題에 있어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② 따라서 雙方은 유엔憲章 第1条와 第2条에 따라 雙方의 모든 紛争을 全的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欧羅巴의 安全問題와 国際的 安全問題 그리고 雙方相互関係에 関한 問題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한다.

第3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폴란드人民共和国은 本条約의 確固한 原則에 立脚하여 雙方의 相互関係를 完全히 正常化하고 包括的으로 発展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② 雙方은 経済，科学，技術，文化，其他諸分野에 있어서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雙方의 協力을 強化하는데에 同意한다.

第4条 本条約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하였거나 雙方이 現在 関係하고 있는 雙務的 또는 多辺的 国際的 合意事項에 抵触되지 않는다.

第5条 本条約은 批准을 必要로 하며 본에서 批准文書가 交換되는 날에 効力을 発生한다.

本 条約은 両締結当事者의 全権代表에 依하여 署名되었다.

本条約은 独逸語와 불란드語로 各各 二通의 原文으로 1970年 12月7日에 바르샤바에서 締結되었다. 独逸語와 불란드語 原文은 同一한 効力을 갖는다.

独逸聯邦共和国

全権代表

빌리·브란트

발터·셀

불란드人民共和国

全権代表

J·치란키빅츠

St·에드리코브스키

獨逸聯邦共和國과 체코슬로바키아 社會主義共和國間의 條約(1973)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슬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国은

欧羅巴 諸民族의 調和的共存이 平和의 必要要件을 構成하고 있다는 歷史的認識에 立脚하여

欧羅巴諸民族에게 極甚한 苦難을 招来하였던 世界第二次大戰과 関聯하여 雙方相互関係에 있어서 不幸했든 過去를 直刻的으로 清算할 確固한 意志로서

1938年 9月29日字 문헨協定은 나치政權이 武力으로 威脅하여 체코슬로바키아共和国에 強要한 協定이라고 하는 事実을 認定하고

其間 両国에는 平和로운 将来를 保障받을 權利를 갖고있는 新世代가 成長하였다는 事実에 直面해서

善隣的関係가 発展할 수 있는 永続的 根本原則을 講究코자하는 意図에서

欧羅巴에서 平和와 安全을 固着시킬 努力의 一環으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平和的協力이 모든 民族의 要望과 世界平和要件에 符合한다는 信念에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条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슬로바키아 社会主義共和国은 本条約의

基準에 따라야 할 雙方相互関係에 있어서 1938年 9月29日의 뮨헨協定을 無効라고 看做한다.

第2条 ① 本条約은 1938年9月30日부터 1945年 5月9日까지에 適用되었든 法律에 依한 自然人 및 法人에 대한 法律効力에는 抵触되지 않는다. 但, 両締結当事者가 正義의 基本原則에 관한 意見差異로 말미암아 無効라고 看做하는 措置의 効力에 관한 事項은 여기서 除外한다.

② 本条約은 締結当事者 各自의 法律秩序에 依한 生存者 및 死亡者의 国籍問題에 抵触하지 않는다.

③ 뮨헨協定에 대한 声明과 関聯하여 本条約을 체코슬로바키아 社会主義共和国이나 或은 체코의 自然人 및 法人이 物的(賠償) 要求를 提起할 수 있는 法的要件을 提供한다고 看做하여서는 안된다.

第3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슬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国은 雙方相互関係에 있어서나 欧羅巴 및 世界安全保障問題에 있어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② 따라서 雙方은 유엔憲章 第1条와 第2条에 따라 雙方의 모든 紛争을 全的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欧羅巴安全問題와 国際安全問題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 한다.

第 4 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슬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国은 上述한 目的과 原則에 따라 雙方이 接하고 있는 国境線의 不可侵性을 現在나 未来에 있어서 認定하고 雙方의 領土保存을 相互間에 全的으로 尊重할 義務를 진다.

② 雙方은 相互間에 如何한 領土的要求도 갖고있지 않으며 未来에 있어서도 如何한 領土的 要求를 提起하지 않을것을 宣言한다.

第 5 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슬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国은 雙方相互間의 関係가 包括的으로 発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② 雙方은 経済, 科学, 技術, 文化, 環境浄化, 体育, 交通, 其他諸分野에 있어서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雙方의 協力을 強化하는데에 同意한다.

第 6 条 本条約은 批准을 必要로하며 본에서 批准文書가 交換되는 날에 効力을 発生한다.

本条約은 両締約当事者의 全権代表에 依하여 署名되었다.

本条約은 独逸語와 체코어로 各各 二通의 原文으로 푸라그에서 締結되었다. 独逸語와 체코語 原文은 同一한 効力을 갖는다.

独逸聯邦共和国 체코슬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国

全権代表 全権代表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東西獨基本條約)의 基本原則에 관한 條約(1972年12月21日)과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手交한 獨逸統一性에 관한 公翰(1972年12月21日)

両締約当事者

平和保存에 대한 雙方의 責任을 認定하고

欧羅巴에 있어서 安全保障과 緊張緩和를 위하여 貢献할 努力의 一環으로

現在 国境線内에 있어서의 欧羅巴諸国 国境線의 不可侵性과 欧羅巴諸国 領土保存과 欧羅巴諸国主権의 尊重이 平和를 위한 根本的 条件이라고 하는 事実을 意識하여

両国이 雙方相互間의 関係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認識하고

可決的与件을 尊重하고 国家的次元의 問題(Nationale Frage)를 包含한 根本的 諸問題에 대하여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에 存在하는 意見差異에 不拘하고

両独国에 存在하는 人間의 福祉를 위하여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協力을 위한 前提条件을 創造할 要望에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正常的이고 善隣的인 相互関係를 発展시킨다.

第2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하는 特히 모든 主権国家의 平等과 独立 및 主体性과 領土的保存 그리고 自決権과 人権 및 無差別原則을 尊重한다.

第3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유엔憲章에 따라 雙方의 紛争을 全的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한다.

雙方은 現在나 未来에 있어서 雙方의 現在 境界線의 不可侵性을 確認하고 領土的保存을 全的으로 尊重한다.

第4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間 어느 一方도 相対方을 国際的으로 代表할 수 없으며 相対方의 名義로 行動할 수 없다.

第5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欧羅巴諸国間의 平和関係를 増進하고 欧羅巴의 安全과 平和를 위하여 貢献한다.

雙方은 欧羅巴에 있어서 軍備縮少와 軍備制限을 위한 努力을 関係国의 安保에 不利하지 않은 範囲内에서 支援한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効果的 国際監視下의 一般的이고 完全한 軍備縮少란 目的을 가지고 核武器와 其他 大量 虐殺

武器의 分野에 있어서 国際安全에 도움이 되는 軍備制限과 軍備縮少를 위한 努力을 支援한다.

第6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各自 自身의 主権이 自身의 領土에만 局限된다는 原則을 受諾한다. 雙方은 内政과 外政에 있어서 各自의 独立과 主体性을 尊重한다.

第7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의 関係를 正常化함에 있어서 実際的이고 人間的인 問題를 調整한다. 雙方은 本条約의 原則에 立脚하여 그리고 雙方相互間의 利益을 위하여 経済科学, 技術, 交通, 法律, 通信, 保健, 文化, 体育, 環境浄化, 其他 諸分野에 있어서 相互協力을 発展시키고 増進시킬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具体的事項을 附属議定書에서 調整한다.

第8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常駐代表部를 交換한다. 常住代表部는 相対方 政府所在地에 設置한다. 同常駐代表部 設置에 関係되는 現実的 問題는 追加的으로 調整한다.

第9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하였거나 雙方이 現在 関係하고 있는 一切의 雙務的 또는 多辺的 条約이나 合意事項에 本条約이 抵触되지 않는다는 데에 合意한다.

第10条 本条約은 批准을 必要로 하며 該当覚書가 交換되는 날에 効力을 発生한다.

本条約은 締結当事者의 全権代表에 依하여 署名되었다.

本条約은 二通의 独逸語 原文으로 伯林에서 1972年 12月 21日에 締結되었다.

独逸聯邦共和国	独逸民主共和国
全権代表	全権代表
애곤·바	미카엘·콜 博士

獨逸統一性에 관하여 獨逸聯邦共和國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政府에 手交한 公翰

(1972年12月21日)

尊敬하는 콜長官

今日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에 基本条約을 署名함에 있어서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本条約이 独逸民族의 自決権에 依한 独逸民族의 統一이 이룩될 수 있는 欧羅巴平和를 위하여 努力할 独逸聯邦共和国의 政治目的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事実을 確認하는 栄光을 갖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1972年12月21日

애곤·바-

独逸民主共和国

長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에 대한 附屬議定書

〈第3条에 관하여〉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両国政府의 全権代表로 構成되는 하나의 委員会를 樹立하는데 合意한다. 同委員会는 両国間의 現在国境線을 再検討하여 必要한 境遇 更新 補完하고 国境線에 대한 必要한 文書를 作成한다. 同委員会는 其外에도 両国国境과 関聯된 問題 即, 河川管理, 에너지供給 및 損害賠償問題를 調整하는데 貢献한다. 同委員会는 基本条約 署名後 作業에 着手 한다

〈第7条에 관하여〉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交易은 現存 協定에 따라 継続한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両国間経済関係를 増進하고 不適切한 規定을 更新하고 交易構造를 改善하기 위하여 長期合意事項을 締結한다.

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科学 및 技術分野의 協力을 促進시키고 必要한 条約을 締結한다.

③ 1972年 条約을 根拠로 이룩된 交通分野의 協力은 이를 継続 拡張하고 発展시킨다.

④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을 위하여 特히 民法과 刑法分野에서 法律的 協調를 必要로하는 者를 위하여 可能한 限 合理的이고 簡単하게 法律分野에서의 法律交流에 관한 条約을 締結한다.

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世界通信協会의 憲章과 国際電信電話条約에 立脚하여 通信協定과 電信電話協定을 締結하는데 合意한다. 雙方은 前記 二個協定을 各各 世界通信協会와 国際電信電話聯盟에 通告한다. 東西独協定 가운데는 雙方의 現存会議事項과 雙方에 有利한 手続節次도 包含시켜 規定한다.

⑥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保健分野에 相互協力한다. 雙方은 相当한 条約을 締結하여 同条約 가운데 可能한 範囲內에서 医薬品의 交換 및 特殊医療所와 療養所에서의 治療에 관한 規定은 마련한다.

⑦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文化分野에 있어서의 協力을 増進시킨다.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雙方은 政府間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会談을 開催한다

⑧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条約 署名後 体育分野에서의 相互関係를 促進시키기 위한 雙方間의 会談을 支援할

用意가 있음을 確認한다.

⑨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에 有害한 不利点과 危険을 除去하기 위하여 環境浄化에 관한 合意事項을 마련한다.

⑩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相互間 및 雜誌의 受取関係 그리고 放送 및 電送(테레비죤)의 受信関係를 拡張하기 위하여 雙方会談을 開催한다.

⑪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両国国民의 非商業分野에서의 代金支払과 代金清算을 調節하기 위한 会談을 開催한다. 雙方은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社会政策的 見地에서 短期協定을 締結하도록 後援한다.

基本條約에 대한 議定書記錄

基本条約은 財産問題에 관해서는 雙方間의 法的地位에 대한 見解差異로 因하여 如何한 規定도 마련하지 않는다.

國籍問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留保事項

独逸聯邦共和国은 国籍問題가 基本条約에 依해서 調整되지 아니하였음을 確認한다.

家族相逢과 旅行條件및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條件의 緩和에 관하여 交換된 公翰

尊敬하는 바-長官!

今日 独逸民主共和国 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基本条約을 署名함에 즈음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는 栄光을 갖는 바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政府는 基本条約発効後 相互関係를 正常化함에 있어서 下記分野의 諸問題를 調整하기 위한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

① 家族離散問題의 解決

② 1972年 5月 26日字 公翰과 関聯하여 観光客을 包含한 東

西独越境旅行者와 訪問客을 위한 諸条件의 改善措置

③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사이에 있어서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条件의 改善

㉮ 越境購物箱子와 小包輸送条件의 改善

㉯ 越境旅行者와 訪問客 받은 小荷物携帶条件의 改善

㉰ 移舍用貨物과 相続받은 貨物에 관한 許可手続의 簡素化

끝으로 本人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1972年12月21日

콜博士 署名

独逸聯邦共和国

首相官署

에곤 바-長官 貴下

尊敬하는 콜長官!

今日 貴下의 다음과 같은 公翰을 正式으로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는 栄光을 갖는 바입니다.

今日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의 基本条約을 署名함에 즈음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는 栄光을 갖는 바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政府는 基本条約発効後 相互関係를 正常化함에 있어서 下記分野의 諸問題를 調整하기 위한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

① 家族離散問題의 解決

② 1972年5月26日字 公翰과 関聯하여 観光客을 包含한 東西独越境旅行者은 訪問客을 위한 諸条件의 改善措置

③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사이에 있어서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条件의 改善

㉮ 越境贈物箱子와 小包輸送条件의 改善

㉯ 越境旅行者와 訪問客小荷物 携帯条件의 改善

㉰ 移舍用貨物과 相続받은 貨物에 대한 許可手続의 簡素化

끝으로 本人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1972年12月21日

바-署名

独逸民主共和国

長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参考文献

1. Friearich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3
2. Georg Schwarzenberger: Power Politics, London, Stevens & Sons Ltd. 1951
3. W. Friedman: An Introduction to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7
4.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Bonn, Siegler & Co. K.G. Verlag, 1957
5. O.M. vonder Gablentz: ,Documents on the Status of Berlin, München, R. Olden burg Verlag, 1959
6.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7. Jürgen Domes; Marie-Luise Näth: Die Aussenpolitik der Volksrepublik China,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2
8. Heinrich End: Zweimal deectsche Aussenpolitik,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73
9. Thomas Weingartner: Die Aussenpolitik der Sowjetunion,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10. Willy Branat: Friedenspolitik in Europa, S. Fischer Verlag, Frankfurt am Main 1968.

11. Karl-Hermann Flach, Werner Maihofer, Walter Scheel: Die Freiburger Thesen der diberalen,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2.

12. Richard Löwenthal und Heinrich Vogel: Sowjetpolitik der 70 er Jahre,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1972.

13. Nobert Blüm: Reaktion oder Reform, Wohin geht die CDU?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2.

14. Emil Bandholz: Zwischen Godes berg und Grossindustrie oder Wo steht die SPD? Rowb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1.

15. Harold Rasch: Politik mit dem Osten, Fischer Bücherei, Frankfurt am Main und Hamburg 1970.

16. Olzog/Herzig: Die politinhen Parteion, SPD, FDP, CDU/CSU, München, Günter Olzog Verlag, 1973.

17. Friedrich Berh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1. Band, Allgemeines Friedensrecht, C.H. Beck-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18. Friedrich Berber: KRIEGSRECHT, C.H. Beck-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19. Birke Neumann, Die Sowjetisierung Ost-Mitteeuropas, Alfred Mettzner Verlag, Frankfurt/M., Berlin, 1959.

20. Ludwig Bergsträsser: Geschichte der politischen parteien in Deutnhland Isar Verlag Gunter Olzog, München, 1955.

21. Dr Friedrich Berber: Völkerrechtliche Verträge, dtv., München, 1973.

22. Dokumente ur Berlin-Frage 1944-1962.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1962.

23.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3.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Hauptband VI, Hauptband

24.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IV, VI, VII, Siegler & Co., Verlag für Zeitarchiv, Bonn, 1972.

25.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Band 7,8,1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ruck-und Verlagshaus, Schneider & Weber, Kassel, 1971.

26.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lsnerdruck KG, Berlin

註1)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 97-98.

註2) Georg Schwarzenberger: Power Politics, Stevens & Sons Ltd., 1951, pp. 387-392; W. Friedmann: An Introduction to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7 pp. 189-198;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atsverlag 1971, p. 98.

註3) Olzog Herzig: Die Politishen Parteien, München, Günter Olzog Verlag, 1973, p. 151.

註4)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The Ollenhauer Plan, Siegler & Co. K.G. Verlag, Bonn 1957, pp. 121-122.

註5) Olzog Herzig: Die Politischen Parteien, München, Gunter Olzog Verlag, 1973, pp. 65-71.

註6)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Bonn, Verlag fur Zeitarchiv, 1957 pp. 116-118, pp. 121-122.

註7) 当時西独首相 Korad Adenauer 및 仏國西外相 Robert Schuman 과 伊太利首相 Alcide de Gasperi 等 欧羅巴統合運動者는 大部分 旧教出身이였음.

註 8) Heinrich End: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schaft und Polifik, Köln, 1973. pp.52-56

註 9) Ibid. pp59-60

註 10)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144

註 11) 1955年 東西独이 다같이 모스코바에 大使館을 設置하게되자 西独의 地位가 弱化되는 것을 防方하기 為하여 곧 할슈타인 原則을 西独議会에서 通過시켜 公布하였다.

Heinrich End: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chalt und Politik, Koln 1973 pp 21-22

註 12) 1969年現在 基準東西独 比較

	西 独	東 独	
面 積	248,571平方키로	108,174 平方키로	100:44
人 口	64,800,000	17,000,000	100:28
国民生産高	5,739 億마크	1,380億마크	100:24

註 13) Tatsachen über Deutschland Bon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1972. p61

註 14) Friedrich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3. p.412

註15) 蘇聯外相 모로토프는 東西独에서 外軍을 撤収하고 東西独을 中立化시키자고 提案하였으며 그 方法으로 東西独議会의 代表로 構成되는 全独理事会를 設立하자고 提議하였다.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Bonn, Verviag fur Zeitarchiv, 1957 pp.83-90, pp.160-161

註16) Ibid., pp.148-150

註17) Wolfnam F. Hanrieder: Die stalu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overlag, 1971, p.104

註18) O.M. von der Gablentz: Documents on the status of Berlin, München, R. Oldenburg Verlag, 1959, pp.132-234

註19) Dokumente zur Berlin-Frage, 2. Auflage München, R. Oldenburg Verlag 1962, pp.468-470

註20) Heinrich Enb: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schaft and Politik, Köln 1973 p.50

註21) Der Spiegel, 19/1965, p.27

註22)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112

註23) Harold Rasch: Politik mitdem Osten Frankfurtam Main, Fischer Bücherei, 1970, p.96 Der Spiegel 13/1967, pp.42-53; Sommer, Bonn changes course, p.483

註24) Europa-Archin M/1966, pp.171-175;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 frage. Hauptband IV, Bonn, Siegler & Co., 1970, pp.124-130

註25) Wolfram F.Hanrieder: Die stabile Krise, Du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l21-122

註26)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IV, Bonn, Siegler & Co., 1970, pp.210-218

註27) Ibid., pp.412-414

註28) John H. Herz: The Formation of grand coalition, in James B. Christoph and Bernard E. Brown, eds cases in Comparative politics, Boston 1968

註29) Bulleti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66, 12,13

註30)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vase, Haupthand IV, Bonn, Verlag fur Zeitarchin, 1970 p.480

註31)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121-122

註32) Thomas Weingartner: Die Aussenpolitik der Sowjetunion,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pp.48-49; Richard Löwenthal und Heinrich Vogel: Sowjetpolitik der 70er Jahre, Stuffgart, Verlag W. Kohlhammer, 1972, pp.30-32

註33) Ibid., pp.41-54

註34) U.S. News & World Report 1969, 12, 29 pp.29-30

註35) Bulleti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70, 8,17

註36) Bulleti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rsregierung, Bonn, 1971, 2, 26;
Ibid., 1971, 4,7;
Ibid., 1971, 7,6,

註37) Friedrich Berh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1. Band, Allgemeines Friedensrecht, C.H. Beck-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p.243

註38) 1973年 7月31日字 西独聯邦憲法裁判所의 東西独基本条約法에 対한 判決文 参照

註39) 西独基本法 第16条, 第23条 및 第146条 参照

註40) DRZ J9 1946, p.131 및 Morgen, 1946, 5.25

註41) Informationsdienst des deutschen Volksrates H.I. p.6